

# 『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송 용 자 의원 외 9명

## 2. 제안이유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미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  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 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8. 27. ~ 9. 3.) 결과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 재발 억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